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2가단2726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솔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걸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10. 2.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8,90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28,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7.경 소외 C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20. 10. 13.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구상금 77,593,000원(=위 45,000,000원+2013. 10. 29.~2018. 7. 19. 대여금 합계 29,793,000원+ 2017. 11. 13.자 대위변제금 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가 이의를 신청하여 소송절차로 진행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12991), 2022. 6. 28. 법원에서 C는 원고에게 2022. 9. 30.까지 25,000,000원을, 2022. 12. 31.까지 23,195,580원을 지급하고, C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2. 7. 14.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 D은 2020. 10. 2. 사망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인 C, E, F, G이 있었다.

다. 피고, C, E, F, G은 2020. 10. 2.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21. 1.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2018. 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가 2021. 1. 22. H은행의 승낙 아래 망인의 위 근저당권부 대출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기재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소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피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피고는, C는 2017. 2.경부터 2019. 3. 7.까지 망인의 I은행계좌 및 H은행계좌에서 합계 139,350,000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 I은행계좌 및 H은행계좌에서 C의 거래처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망인 명의의 위 각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망인 소유의 돈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C가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위 지분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위와 같은 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에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됨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설령 수익자가 취득 후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종국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수익자에 의한 채무 일부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계약인수 전후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명백하게 피보전채권액 및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건물 중 C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 중 28,909,000원[28,909,090원=159,000,0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359,000,000원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0,000,000원)×2/11,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28,909,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취지 속에 목적물 자체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가액반환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별지

당시 359,000,000원인 사실이인정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시가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